

## 위 탁 변 경 결 정 신 청

사 건 2000푸 000호

보호소년 ○ ○ ○

생년월일 : 19○○년 ○월 ○일생 주민등록번호 : 111111 - 1111111

직업 :

주거: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 현재, ○○시 소년분류심사원 수용중

보호자 🗌 🗎

주소: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

보호소년과 관계: (부, 모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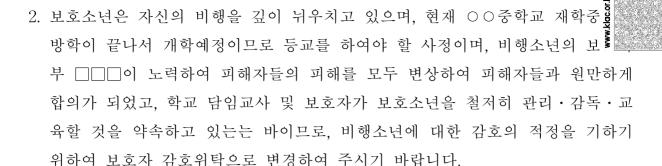
위 보호소년에 대한 귀원 ○○ 푸 ○○호 소년보호사건에 관하여 보호소년의 (보호자, 보조인)은 다음과 같이 위탁변경결정을 신청합니다.

## 신 청 취 지

위 사건에 관하여 20○○. ○. ○.에 한(소년분류심사원 또는 ○○시설) 위탁을 보호자 부 □□□의 감호에 위탁하는 것으로 변경한다. 라는 결정을 바랍니다.

## 신 청 이 유

1. 귀원은 지난 20〇〇. 〇. 〇. 위 보호소년에 대하여 소년법 제18조 1항에 따른 임시조치로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.



## 첨 부 서 류

- 1. 피해자 합의서 1통
- 1. 학교담임선생의 지도계획서 1통
- 1. 보호자 부 · 모의 서약서 1통
- 1. 가족관계증명서(보호자의 것)

2000. 0. 0.

보호소년 ○ ○ ○ ○ 의 보호자 ○ ○ ○ (인) (또는 보조인 변호사 ○ ○ ○ (인))

ㅇㅇ가정법원 귀중

	O. Kr	한법률구조공단
가위탁의	사건의 조사·심리의 필요에 의하여 소년의 신병을 확보하는 임시 를 가위탁이라 함(소년법 18조1항)	
가위탁의 요 건	1. 심리조건이 있을 것 2. 소년이 범행을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3. 심리개시의 개연성이 있을 것 4. 소년의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 5. 소년이 긴급한 보호를 필요로 할 것 6. 소년을 수용하여 심신감별을 할 필요가 있을 것	
피위탁자	1. 소년의 보호자 또는 학교장 2. 병원·소년분류심사원 기타 적당한 시설	
가위탁의 변 경	소년부판사는 위 가위탁조치로 보호소년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고 난 후 직권 또는 보호소년 또는 보호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위탁변경할 수 있음. 소년 또는 보호자의 신청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수단에 불과하여불복절차 없음	